

의안번호	제155호
의결 연월일	2007년 월 일 (제264회)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07년 10월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155호
----------	-------

제출연월일 : 2007년 10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민선이후 공공부문의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고 해결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손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 정책의 입안·결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안 제3조)

- 도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권고하기 위한 위원회가 필요함

####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으로는 도의회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재직자, 그 밖에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함
-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다. 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정지원(안 제12조, 제13조)

- 갈등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조사·연구·교육 훈련과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도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도에서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도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권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에서 갈등예방 및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 시·군,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권고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갈등예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복지여성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규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재직자

3.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충청북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①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의·자문·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등) 도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등) 도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범 령

###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1995.7.1, 1999.12.31, 2005.4.27>